

함께 혁신, 함께 성공, 새로운 전북

**전북특별자치도민이 궁금해하는
알기쉬운 전북특별법**

전북특별자치도

목 차

1.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특례(제18~24조)	1
2. 한우 등 가축산업 보호 육성(제25조, 83조)	2
3.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(제26조)	3
4. 바이오 융·복합 등(제27~28조)	4
5. 미래에너지 산업(제30~32조)	5
6.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(제33~37조)	6
7. 이차전지산업 진흥(제38조)	7
8.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 특례(제39~40조)	8
9. 무인이동체 산업(제41조)	9
10. 국제케이팝학교(제42조)	10
11.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(제43~45조)	11
12. 지역특화관광 진흥(제46~48조)	12
13.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(제49조)	13
14.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(제50~62조)	14
15. 출입국관리법 특례(제63조)	15
16. 새만금 고용특구(제64조)	16
17.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(제65조)	17
18. 귀농어·귀촌 활성화(제66조)	18
19. 대학 학생정원 특례(제67조)	19
20. 금융산업 육성(제68~72조)	20
21. 전북형 산업 지구·단지·특구 지정(제73~78조)	21
22. 도서관 조성 특례(제79조)	22
23. 재난 및 안전 기준 강화(제80~82조)	23
24. 중소기업 및 지역 농수산물 지원 등(제84~86조)	24
25. 해양수산 산업(제87~90조)	25
26.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(제91~98조)	26
27.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(제15~17조)	27
28.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(제29조)	28
29.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(제99~102조)	29
30. 지방자치단체 특례(제103조)	30
31.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(제105조)	31
32. 자치교육 실현 특례(제112~115조)	32
33. 감사위원회 설치(제117~124조)	33

1.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특례(제18~24조)

전북자치도 농업정책과(☎ 063-280-2697)

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, 농지전용허가·협의 권한 등 도지사 자율권이 확대됩니다.

▣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'농생명 산업'이 특화 발전

- (농지법 특례) 지구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,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도에 이양
- (농생명산업 육성) 식품·종자·미생물·동물용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-가공-유통-연구개발의 집적화

시행 전	시행 후
▶ 농업진흥지역 해제 : 1만㎡ 초과 장관 권한 ▶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제한 -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제한 - 건축물 등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농지 전용 면적 제한	▶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 - 농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생명지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▶ 농생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 자치법규화 - 도조례로 달리 정함(농생명지구 특성 반영 가능)
▶ 특화산업의 R&D 및 유통시설 등 외연 확장이 쉽지 않고 제약 사항이 많음	▶ 특화산업(식품·종자·미생물·동물용의약품 등)의 생산-가공-유통-연구개발 기능 집적화 - 미래신산업(푸드테크, 디지털육종, 반려산업 등) 선점

조문명	▲ (제18조)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▲ (제20조)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▲ (제22조) 농생명지구내 진흥사업 지원 ▲ (제24조)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	▲ (제19조)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▲ (제21조)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 정비 특례 ▲ (제23조) 농생명지구 내 곤충사업의 육성
-----	---	--

2. 한우 등 가축산업 보호 육성(제25, 83조)

전북자치도 축산과, 동물방역과(☎ 063-280-2684, 2658)

전북자치도의 한우를 우량집단으로 개량·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한우로 육성합니다.

▣ 질 좋은 고능력 한우(J-카우)로 구축·육성 실시 등

-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고능력 한우로 지정(필요한 조치 및 전담기관 지정)
-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자격과 임명·위촉 사항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

시행 전	시행 후
▶ 경기둔화로 한우소비 위축, 도매가격 하락 소매가격에 미반영, 추가수요 창출 곤란 * (전북 한우개량사업)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, 친자확인검사지원사업,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* (한우 사육현황(전북)) 10,388호(11.2%), 451천두(12.8%) ※ 전국대비 '22) 451/3,528 ▶ 가축방역관은 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에 따른 방역 업무 확대, 수의직 공무원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업무 추진 한계 * 수의직렬의 경우 격무로 응시율 저조, 이·퇴직 등 결원 증가('17년 이후 임용대비 36% 이·퇴직 발생) ▶ 공수의는 동물병원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 등만 위촉	▶ 유전능력이 우수한 전북 한우로 구성된 핵군 조성을 통한 한우산업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저탄소 시대에 맞는 저탄소 한우 생산을 유도 ▶ 유전체 지도 등을 구성하여 전북 한우의 도체 및 맛 형질의 우수성을 보존 ▶ 민간수의사 등을 가축방역관 및 공수로 위촉하여 가축방역, 축산물 위생 업무 등 철저 대응 - 가축방역관 임명조건 확대 : 공무원 수의사, 공중방역 수의사, 공수의, 민간수의사 - 공수의 위촉 조건 확대 : 동물병원 개설 또는 근무 수의사, 민간수의사

조
문
명

▲ (제25조) 한우산업의 보호·육성

▲ (제83조)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

3.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[제26조]

전북자치도 탄소바이오산업과(☎ 063-280-2155)

전북자치도의 주력산업인 탄소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탄소소재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합니다.

▣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통한 관련 사업 보호육성 추진

-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·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
-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,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

시행 전	시행 후
▶ 국내 유일의 탄소 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보유('23.4, 전북대병원)하는 등 인프라는 갖춰 가고 있으나 국내 개발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무	▶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탄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의료기기를 융합한 의생명산업 거점화 산업생태계 구축 ▶ 고부가가치 탄소소재를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첨단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시장 선점

조
문
명

▲ (제26조)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

4. 바이오 융·복합 등 [제27~28조]

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, 탄소바이오산업과 ☎ 063-280-3404, 2155)

전북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등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합니다.

■ 바이오융복합 등 산업 진흥 추진

- 바이오융복합 산업 진흥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
- 동물용의약품 산업 진흥 필요 시책 추진 및 신약 등 의약품 비용 지원

시행 전	시행 후
▶ (동물용의약품)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중소벤처기업 신약개발 고부담 등의 어려움 발생	▶ 산업화 지원 기반시설의 이용 활성화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* 경쟁력 강화 *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, 동물용의약품 효능·안전성 평가센터 건립('21~'23년),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('23~'25년), 임상시험 지원센터('24~'26년) - 동물용의약품 산업 촉진에 따른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, 펫푸드 산업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(고부가가치 의약품, 진단키트, 치료용 의료기) 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▶ (바이오융복합) 바이오화학, 화장품, 의료기기, 식품 미생물 등 생명산업 경쟁력 보유하나 연계 협력체계 부족 * (바이오기업) 개소 수 35개 / 총종사자 1,337명 / 연구직 258명 / 연구개발비 25,311백만원 * (바이오관련 정출연 4) 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평가 연구소,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	▶ 전북자치도의 생명산업 연구역량과 제약산업 육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, 바이오융복합 핵심소재 개발 등을 통해 바이오융복합 산업의 거점화 실현 - 농생명, 화학, 의생명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 기반으로 미래 바이오융복합 산업을 선도하고, 혁신역량 강화 기대

조
문
명

- ▲ (제27조)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
- ▲ (제28조)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

5. 미래에너지 산업 (제30~32조)

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 ☎ 063-280-3607)

전북자치도가 수소 및 신·재생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합니다.

▣ 수소 및 신·재생 에너지 사업의 촉진 및 관리

-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조항 신설
- 신·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, 발전지구 지정·육성
- 신·재생에너지 이용에 적절한 공장·사업장·집단주택단지 등에 종류지정 및 설치 권고

시행 전	시행 후
▶ 수소경제 경쟁력 확보를 토대로 발전방안 필요 -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, 부안 수전해생산기지,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지,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추진	▶ 국내 유일,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거점 구축으로 신 재생에너지·탄소소재·수소생산 운송 등 전후방 연계산업 집적화 기대
▶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로 사업추진 어려움 발생 - '17년 3월 전북서남권(부안·고창)내 구축·추진시	▶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시 주민수용성 사업을 제도화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▶ 지역주도적 주민수용성 확보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속도감 있게 추진 기대 - 서남권 해상풍력 2GW, 새만금 3GW 등 5G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기 추진

조 문 명	▲ (제30조)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▲ (제31조) 신·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▲ (제32조) 신·재생에너지 이용권고
-------------	---

6.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(제33~37조)

전북자치도 사회복지과(☎ 063-280-2405)

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자치도를 고령친화산업시장의 메카로 육성합니다.

■ 고령화 산업시장 확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 복합단지 지정

- 복지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 구역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지정·고시
-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부설연구소를 설치
- 고령친화 진흥재단을 통한 연구개발기관의 설립 특례

시행 전	시행 후
▶ 국가차원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부재 - 국내 고령친화산업 기반 취약, 기술력 미흡 - 고령친화 전문인력 부재 - 인재 육성과 기술연구 등 산업계와의 협력 부재	▶ AI, IoT, 돌봄로봇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견인 ▶ 고령친화산업의 블루오션인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선점 ▶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견인 및 고령노인의 삶의 질 향상
▶ 전북고령지수 24% (전국 18.9%) -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	▶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으로 실버세대 서비스 확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

조
문
명

- ▲ (제33조)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
- ▲ (제35조)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구기관 운영
- ▲ (제36조)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
- ▲ (제37조)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

- ▲ (제34조)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

7. 이차전지산업 진흥 [제38조]

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(☎ 063-280-3574)

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 집중 육성 및 이차전지 산업 진흥 시책을 확대 추진합니다.

▣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, 국가는 필요시 지원 가능

시행 전	시행 후
▶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('23.7월) - 광물·리사이클링 분야 특화 ▶ 청년인구 유출 심각 - 지역내 일자리 부족, 20~34세 청년인구 6,200명 순감소 ▶ 이차전지 관련분야와 연계한 도내 일자리 마련 시책 필요	▶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혁신 촉진 도모 ▶ 전북도의 특화 산업과의 연계 및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
조문명

▲ (제38조) 이차전지산업의 진흥

8.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 특례 (제39~40조)

전북자치도 주력산업과(☎ 063-280-2057)

전북자치도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으로 신속·정확한 대체부품 인증을 통해 부품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.

▣ 도지사가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부여

- 인증받은 사실에 대해 부품에 표시
- 지정절차,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을 별도 지정
-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성능·품질 인증과 수출 절차 간소화

시행 전	시행 후
▶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인증이 중요 ▶ 수도권 제외 전북에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으나, 인증기관의 부재 - 시험평가와 제품개발 지원 어려움 * (전북 자동차산업) 국내 중대형 상용차 96% 생산 자동차 부품기업 572개, 종사자 2만명 * 국내인증대체부품 생산기업 42개 중 14개(33.3%)가 도내 집적	▶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·품질 인증 등 특례를 통해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업계의 구조적 한계 극복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▶ 자동차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 산업 집중 육성, 대체부품 산업 특화로 부품기업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

조
문
명

- ▲ (제39조)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·품질 인증 등
- ▲ (제40조)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

9. 무인이동체 산업 [제41조]

전북자치도 주력산업과(☎ 063-280-4718)

새만금에 무인이동체의 설계, 제작, 시험평가, 실증, 인증 등 사업화의 전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게 됩니다.

■ 새만금에 드론, 무인농업기계, 자율주행차,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, 행정적 자원 집중

-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연구, 실증 인프라 연계 활용 가능
- 정부가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
- 종합실증단지 구축으로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조성으로 기업 유치,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 기대

시행 전		시행 후
▶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 및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 시장 진출 유도 특례 필요 ▶ 드론, 무인농업기계,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분산되어 있음 - 무인이동체를 포괄하는 규제 완화,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산업육성 한계	⇒	▶ 설계, 제작, 시험평가, 실증, 인증 등 사업화의 전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,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 기대 ▶ 공중, 육상, 해양 전 분야 무인이동체 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 -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 및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시장 진출 유도

조
문
명

▲ (제41조)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

10. 국제케이팝학교 [제42조]

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(☎ 063-280-3385)

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케이팝 학교가 전북자치도에 설립됩니다.

▣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‘국제케이팝학교’ 설립·운영

○ 국제케이팝 학교는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로 설립

시행 전		시행 후
▶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외국 거주기간이 총 3년 이상		▶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, 인원비율 등을 달리 정함 - 외국인+내국인 가능(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)
▶ 민간주도 K-POP육성 - 학업중단 등 사회문제	⇒	▶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공교육을 수행 - 케이팝 특화 문화예술 전문교육과정과 보통교과 교육과정 병행으로 전인교육 실현 - 하이브, SM 등과 연계한 교육시스템 구축 가능
▶ 케이팝을 배우려는 해외 청소년 증가 - 전 세계 한류팬 1억 7,800만명		▶ 정부 차원의 글로벌 K-POP 인재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신산업 성장 -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따른 숙박, 음식, 관광 등 인접산업 연계성장 및 세수 증대

조문명

- ▲ (제42조)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
- ▲ (제114조) 초·중등교육에 관한 특례

11.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[제43~45조]

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(☎ 063-280-3385)

전북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케이문화 융합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,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거점으로 육성합니다.

▣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을 통해 K-문화융합산업 육성

-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·해제 권한 이양
- 전문인력양성지원센터 지정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
- 문체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은 문화프로젝트·사업자를 우선 고려하여 우수문화프로젝트·사업자로 지정·지원

시행 전	시행 후
▶ 전북은 다양한 유·무형 전통문화자원(소리, 시, 서, 화 등) 보유하고 있으나, IT를 융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활용 필요	▶ 한국 전통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케이문화(K-Culture)융합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, 융합콘텐츠상용화를 통한 국내외 거점으로 육성 * (예) 북유럽 신화 토르(천둥의 신) : 마블영화, 만화, 게임, 테마파크 등 부가가치 창출
▶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형성 미진 -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창업 및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기업 육성 지원 필요 * 기업 (전국대비 2.7%), 매출 (전국대비 0.8%)	▶ 전북의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기존 전통문화인의 일거리 창출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효과를 창출

조 문 명	▲ (제43조)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▲ (제44조)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▲ (제45조)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
-------------	--

12. 지역특화관광 진흥 (제46~48조)

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, 해양항만과 ☎ 063-280-3333, 2705, 4712)

야간관광산업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해 글로벌 대표 관광 도시로 도약하여 관광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

■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통해 ‘국제회의산업’ 발전

- 국제회의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, 국제회의 유치·개최 지원 등

■ 「야간관광산업의 육성」조례를 통해 야간관광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생활인구 증대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활력 제고

-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 등 지역관광 자생력 기반 및 관광의 신성장 동력 마련
- 통합적 야간관광 지원 정책 및 체계 구축으로 야간관광콘텐츠, 인프라 등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

시행 전	시행 후
▶ 주간관광 중심으로 인한 비숙박형 전북관광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관광소비촉진 미흡 ▶ 전북권 국제회의도시 미지정 - 2014년 이후 국제회의도시 지정 없음	▶ 지역체류형 관광육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활력 제고와 새로운 전북관광 성장동력 창출 ▶ 전북권 특정 시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- 국제회의 유치·개최,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원 등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력 확보



조 문 명	▲ (제46조)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▲ (제47조)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▲ (제48조)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
-------------	---

13.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(제49조)

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(☎ 063-280-3313)

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여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·연구·전시·교류 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관광을 선도합니다.

▣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, 국가의 입주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제기구에 대한 행·재정 지원

시행 전	시행 후
▶ 고군산군도 해상은 난파선과 수중유물이 집중매장* 해역인 교역로이나 해양문화시설 부재로 연구 및 활용 불가 * 전북 바닷가 면적 3.06km² - 유물 1만500여점 발굴 (국립해양문화재연구원 보관, 목포)	▶ 일대일로 해양굴기 전략 추진하는 중국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거점 조성,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 브랜드 구축 ▶ 현재 추진 중인 「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」 설립과 연계하여, 지역 내에서 해양문화자원의 조사·연구 및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

조
문
명

▲ (제49조)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

14.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(제50~62조)

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, 산림녹지과 (☎ 063-280-3337, 3112)

개발이 제한된 동부권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개발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.

▣ 산림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 마련

- 전북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, 사업시행자의 지정·취소,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
- 전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관리 및 지역특화 자연 휴양림 지정 권한

시행 전	시행 후
▶ 풍부한 산림자원*을 보유함에도 활용에 대한 인허가 및 행위제한 등으로 산악 활용 어려움 * 동부권은 산림면적 평균 71.8%(전국 평균 63%)	▶ 산악관광지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산악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▶ 민간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
▶ 산림휴양시설의 신규 공급 및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 등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로 인한 한계점 봉착	▶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적시 공급, 관련 인프라 확대로 도민 수요 충족 - 산림자원 활용한 산악관광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

조문명	▲ (제50조)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▲ (제51조)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▲ (제52조)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▲ (제53조)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▲ (제54조)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▲ (제55조)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 ▲ (제56조) 산악관광진흥지구 인·허가 등의 의제	▲ (제57조) 산악관광진흥지구내 「산지관리법」등 적용의 특례 ▲ (제58조)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▲ (제59조)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▲ (제60조)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▲ (제61조) 산림문화·휴양·복지 특례 ▲ (제62조) 준공검사
-----	---	---

15. 출입국관리법 특례 (제63조)

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 ☎ 063-280-2116

전북자치도의 지구·특구 내 연구기관 및 기업의 외국인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.

▣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구·지구에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의 인적 기반 구축

○ 특구·지구*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확대 가능

* ①농생명산업지구(제19조), ②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(제33조), ③문화산업진흥지구(제43조), ④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(제50조)

시행 전	시행 후
▶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인 체류기간 부여로 현장여건 반영 한계 - 외국인근로자(E-9) : 4년10월(3년+1년 10개월) - 지역특화형비자(F-2): 5년 (2년+2년+1년) ▶ 지역소멸* 위기 극복대안 필요 상황 * 인구감소지역 10개시군 (71.4%)	▶ 특구·지구 연구기관 및 기업의 외국인 고용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공급 원활화, 체류기간 확대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거주 ▶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전북지역 농생명 분야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 및 지역 산업계의 중추적 인재로 정착

조
문
명

▲ (제63조)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

16. 새만금 고용특구 (제64조)

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(☎ 063-280-2825)

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통한 맞춤형 인력 수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지역이 됩니다.

■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으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 설치

-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,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, 구직자 직업지도,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

시행 전		시행 후
▶ 새만금 기업유치 활성화에 따른 기업 맞춤인력 필요 -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입주 업체 18개사 (투자규모 7조 8,221억원) - 필요 인력 7,100 ~ 1만명 추산으로 향후 2~3년 내 심각한 인력난 예상	⇒	▶ 원활한 노동력 수급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구인난 해소 ▶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으로 고용 활성화 및 근로자 직업 안정 도모

조
문
명

▲ (제64조)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

17.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(제65조)

전북자치도 창업지원과(☎ 063-280-3270)

우수 혁신 역량과 성장성이 높은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 자율권이 확대됩니다.

■ 해외 우수인력 및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 유치 촉진

○ 해외 우수 창업기업 지원시설 지정·운영을 통한 정착 및 사업활성화 지원

시행 전	시행 후
▶ 민선8기 들어 창업조직 확대, 창업펀드 대 규모 조성, 민간 주도 투자환경 조성 등 역동적 창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해외스타트업 유치 필요	▶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대상 비자발급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- 160개 국내법인 설립 및 258명 일자리 창출 등 ▶ 도 조례 제정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전북만의 독자적인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조
문
명

▲ (제65조)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

18. 귀농어·귀촌 활성화 (제66조)

전북자치도 농촌활력과(☎ 063-280-4158)

귀농어·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·귀촌 청년 정착 및 초기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▣ 귀농어·귀촌인 안정적 정착으로 인구 유입 및 농촌 활력 유도

- 귀농어·귀촌인 청년지원 및 초기지원 기간 확대로 도내 귀농·귀촌인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

시행 전	시행 후
▶ 귀농어인·귀촌인 기반이 미확립된 상태에서 자연재해 발생시 지원기간(3년)이 짧아 대처 및 복구에 어려움이 있음	▶ 귀농어 후 기반 미확립 상태에서 자연재해 등 발생시 초기 지원기간(5년) 확대 ▶ 귀농어·귀촌 청년 농촌 취창업, 능력개발, 생활 안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귀농어·귀촌 청년 유입확대 ▶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정비로 전 연령대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하여 전북 귀농어·귀촌인구 평균 2% 증가 기대

조문명

▲ (제66조) 귀농어·귀촌 활성화 특례

19. 대학 학생정원 특례 (제67조)

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 ☎ 063-280-5112

교육부 '대학설립 운영 규정'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생정원 조정이 가능해집니다.

▣ 지역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

- (도) 조례에서 학생정원 조정요건 규정
→(대학)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정원 조정 및 학생모집
- '학생정원 조정요건'을 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이행 여부 점검 및
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도 도가 실시

시행 전		시행 후
▶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 - 교사, 교원, 수익용 기본재산 규정	⇒	▶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함 - 교사, 교원, 수익용 기본재산 규정을 도 조례로 완화

조문명

▲ (제67조)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

전북자치도가 AI 기반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합니다.

▣ 금융산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금융관련의 전북 이전을 유도

- (금융전문인력 양성) 도내 대학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·운영
- (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)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 지원 근거 명시
- (금융교육의 실시 등) 금융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시책 시행
- (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) 고부가가치 핀테크 산업을 전북자치도의 미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여 디지털 금융의 거점 조성, 지원센터 설립
- (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) 요건 내의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고, 지정 금융기관은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초과 소유

시행 전	시행 후
▶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 지원 불가 ▶ 금융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일부에 한정 - NPS 자체 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및 도내 대학 협업 학석사 과정 운영 - 디지털 금융 분야 사업화 및 법률회계 등 핀테크 벤처기업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	▶ 전북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 자금 지원 가능 ▶ 전북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운영 ▶ AI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혁신 기업 육성 및 집적화 가능 - 전북 스타트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▶ 고부가가치 핀테크 산업을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여 디지털 금융의 거점으로 조성 ▶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투자조언장치(로보어드바이저) 요건 충족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가능



조	▲ (제68조) 금융전문인력 양성	▲ (제71조)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
문	▲ (제69조)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	▲ (제72조)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
명	▲ (제70조) 금융교육의 실시 등	

21. 전북형 산업 지구·단지·특구 지정 (제73~78조)

전북자치도 기업유치추진단, 탄소바이오산업과, 미래산업과, 창업지원과 ☎ 063-280-2754, 2156, 2281, 3269

전북자치도 내에 전북형 지구·특구·단지를 지정하여 도 특성에 맞는 산업인프라를 구축합니다

▣ 전북형 산업지구·단지·특구 지정

- (투자진흥지구) 신규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략산업의 신설투자 유치에 집중 활용하고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전북에 유치
- (연구산업진흥단지) 연구산업단지 지정조건 완화로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에 조성
- (연구개발특구)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사항과 지정특구 면적 내 변경 및 확대에 대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
- (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)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가능
- (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) 정부가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있는 IT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조성·운영

시행 전	시행 후
▶ 전북의 산업단지 규모 128,092천㎡('14년)→ 133,525천㎡('23년)으로 연평균 0.46% 증가에 불과 ▶ 산업단지 지정이 기존 추세대로 이루어질 경우, 추가 기업 유치는 '40년까지 284개 전망	▶ 특례 통해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위한 토지 공급을 연평균 기존 분양면적의 2.5%씩 증가한다고 할 경우, 2040년에는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 시설 분양 면적의 50%를 추가 확보 - 분양면적 : 53,065천㎡('23년) → 80,745천㎡('40년) ▶ 추가 기업 유치는 '40년까지 1,815개 전망

조 문 명	▲ (제73조)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▲ (제74조)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▲ (제75조)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	▲ (제76조)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▲ (제77조)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▲ (제78조)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·운영
-------------	--	---

22. 도서관 조성 특례 (제79조)

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(☎ 063-280-2491)

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관리를 통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.

■ 도서관법 제36조(등록) 관련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기준(사서, 시설 및 자료 기준) 마련

- 도내 사립 공공도서관 1개소(정읍시 명봉도서관) 등록 관리 등

시행 전		시행 후
▶ 사립 공공도서관 미등록 운영 - 정읍시 명봉도서관 등	⇒	▶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- 정읍시 명봉도서관 등록 - 도내 신규로 설치되는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

조
문
명

▲ (제79조)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

23. 재난 및 안전 기준 강화 (제80~82조)

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, 방호예방과(☎ 063-280-2991, 3847)

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추가 지정, 지리적·인구적 여건을 반영한 화재안전망 구축 등 전북자치도만의 ‘안전’ 인프라가 확대됩니다.

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

-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확대 지정
- 농산어촌마을 소방용수시설 및 상수도 미연결지역 산불소화장치

시행 전	시행 후
▶ 민방위 경보를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고, 전파 및 전달 체계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 존재 ▶ 현재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상수도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, 상수도 설치 되지 않은 지역(178개소) 다수 및 농산어촌지역에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없음	▶ 전국 최초 재난 안전 시책 시행으로 도민의 안전 인프라 확충 및 필요시 전파 대상 건축물 도지사 추가지정 가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 제고 -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도조례로 추가 지정 ▶ 농산어촌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근거 마련 - 마을별 소화전 1개 이상 설치 ▶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소방용수시설·비상소화장치 설치로 산불 발생시 초기대응 가능

조
문
명

- ▲ (제80조)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
- ▲ (제81조)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
- ▲ (제82조)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

24. 중소기업 및 지역 농수산물 지원 등 (제84~86조)

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, 농생명식품과, 건강증진과(☎ 063-280-3246, 4160, 4670)

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앞장섭니다.

- ▣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내 공공형 급식시장에 지역에서 생산한 전북산 농산물 우선 구매
- ▣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및 중기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우선구매조치 요구권한 이양

시행 전	시행 후
▶(지역중소기업)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경제위기 및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에 대한 대비 미흡 - 고환율, 고물가, 고금리 등 3고 상황 장기화에 인력난까지 겹쳐 존폐 기로(22.9,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) - 도내 17개 중소기업 집중호우로 공장침수 및 토사유입 등 피해(20.8월)	▶(지역중소기업) 기술개발제품 판로 지원, 기술개발 의욕 높임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- 지역 중소기업밀집지역 및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선제적 모니터링 - 낙후된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, 자금, 판로 등 특례지원통해 기업유치 촉진과 활성화 기여
▶(지역산 농산물 공급) 현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시스템 상 경쟁입찰은 해당 지역 농산물 우선공급에 제약	▶(지역산 농산물) 지역 먹거리 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- 지역 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우선 공급하여 지역 생산자의 소득 향상 - 전북도 소재 학교 및 공공급식기관(군부대, 교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 등), 지자체에 지역 식재료를 우선 공급,,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 기반 개선

조
문
명

▲(제84조)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

▲(제86조)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

▲(제85조) 학교·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

전북자치도의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수산종자산업 등을 육성하여
어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.

▣ 전북자치도 내 각종 해양수산 산업에 대해 집중 육성

- (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) 허가의 시설기준과 허가의 우선순위 및 변경허가등을 전북자치도 사무로 이양
- (시험양식업 특례)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방법 제도 개선
- (낙시어선의 이용) 낙시어선업 신고요건 및 행정처분기준 완화
- (유어장의 지정) 유어장의 지정기준 및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임

시행 전	시행 후
▶ '94.8월 이후 마을양식어장에서 자원관리채취선 사용 불가 등으로 수익성 저하 ▶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고부가 가치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보급 미비 * 내수면양식 현황('22. 12월 기준) : 전국 2,806건, 887ha / 전북 715건, 252ha	▶ 새로운 어구·어법 또는 어장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제·개정하여 빠른 민원 해결과 어업 경쟁력 강화 ▶ 전라북도 특화 어종에 대한 시험어업 성과로 지역 어민의 소득 창출, 특성화 발전에 이바지 ▶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어종의 어구·어법, 어장 개발을 통해 어종 다양성을 확보,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기반 구축(무분별한 시험어업, 불법 어업 양성화 예방대책 마련)

조
문
명

- ▲ (제87조)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
- ▲ (제88조) 시험양식업 특례

- ▲ (제89조) 낙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
- ▲ (제90조)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

26.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 (제91~98조)

전북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(☎ 063-280-3535)

다양한 환경관련 특례 이양으로 생태·환경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북 맞춤형 지구·단지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.

- ▣ 4개 지구*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으로 생명경제 비전에 맞는 도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*농생명산업지구, 문화산업진흥지구, 산악관광진흥지구, 산림복지단지
- ▣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및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으로 탄소중립 및 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
- ▣ 도립공원 지정·관리 권한과 해제 및 축소 권한을 도지사로 일원화

시행 전	시행 후
▶ 전국 기준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지역 간 불균형 초래	▶ 특례 추진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대안 마련 ▶ 지자체의 직접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전북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지역의 환경 거버넌스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기반마련에 기여
▶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나,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 미흡 ▶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교육도시로 도민의 환경교육 의식 부족	▶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도시 조성 및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육성으로 전북자치도의 비전인 '글로벌 생명경제도시' 비전 확립
▶ 도립공원 자연환경 훼손 이유로 지정(도지사), 해제·축소(환경부) 권한이 이원화되어 업무효율성 및 자치권 침해	▶ 권한의 일원화로 행정효율성과 자치권 향상으로 도립 공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 및 관리



조문명

- ▲ (제91조)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
- ▲ (제92조)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
- ▲ (제93조)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
- ▲ (제94조)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

- ▲ (제95조)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
- ▲ (제96조)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·평가 등 특례
- ▲ (제97조) 특례의 존속기간 등
- ▲ (제98조)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

27.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(제15~17조)

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(☎ 063-280-2304)

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.

▣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독자적인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

-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도종합계획(20년 단위)을 수립하였으나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독자적인 「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」 수립 권한 이양

시행 전	시행 후
▶ 「국토기본법」 제13조(도종합계획의 수립)에 따른 도 종합계획(20년 단위) 수립 - 국토교통부 심의·승인 -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('21~'40)	▶ 전북특별법 제15조(종합계획 수립)에 따른 독자적인 종합계획(10년) 수립 - 종합계획심의회 구성·심의, 의회 동의 - 제1차 글로벌생명경제도시('25~'34)

조 문 명	▲ (제15조) 종합계획 수립 ▲ (제16조) 종합계획의 결정 ▲ (제17조)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
-------------	---

28.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(제29조)

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과(☎ 063-280-4680)

감염병 대비·대응에 대한 전북자치도 역량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지사의 자율권이 확대됩니다.

■ 감염병 대비·대응 시책을 통해 '전북형' 감염병 특화

- 지역 다발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역량을 '강화'할 수 있는 사업 추진
-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 인력·조직체계 등을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

시행 전	시행 후
▶ 단일 방역망 정책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정책 추진 한계	▶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적 인력·조직 마련 ▶ 지역 다발 감염병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대비 역량 강화 감염병 사업 추진

조
문
명

▲ (제29조) 감염병 대비·대응역량 강화

29.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(제99~102조)

전북자치도 총무과(☎ 063-280-2245)

인사교류 및 파견, 우수공무원 특별승진,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,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인사 분야의 자율권이 확대됩니다.

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, 우수공무원 특별승진,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운영, 지역인재 선발채용의 절차·요건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맞게 규정하여 공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

○ 인사교류 및 파견 요건,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요건,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요건, 지역인재 선발채용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

시행 전		시행 후
▶ 인사교류 및 파견 요건 등 내용 규정 -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 ▶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요건 등 내용 규정 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 ▶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요건 등 내용 규정 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 ▶ 지역인재 선발채용 요건 등 내용 규정 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	⇒	▶ 인사교류 및 파견 요건 등 내용 규정 -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근거 ▶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요건 등 내용 규정 -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근거 ▶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요건 등 내용 규정 -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근거 ▶ 지역인재 선발채용 요건 등 내용 규정 -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근거

조
문
명

▲ (제99조)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
▲ (제100조)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

▲ (제101조)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
▲ (제102조)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

기타

30. 지방자치단체 특례 (제103~104조)

전북자치도 자치행정과(☎ 063-280-2271)

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, 읍·면·동 행정구역 개편 승인 등 도지사 권한이 확대됩니다.

■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

-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권자를 도지사까지 확대
- 읍·면·동 행정구역 폐지·설치·분리·합병 승인권자를 도지사로 변경

시행 전		시행 후
▶ 통합 지방자치단체 건의 - 주민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장 ▶ 읍·면·동 구역 폐지·설치·분리·합병 승인권자 - 행정안전부장관	⇒	▶ 통합 지방자치단체 건의권자 확대 - 주민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장,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▶ 읍·면·동 구역 폐지·설치·분리·합병 승인권자 변경 - 전북특별자치도지사(단 행정안전부장관 사전협의 필요)

조
문
명

▲ (제103조)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

▲ (제104조) 읍·면·동의 구역 특례

31.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(제105조)

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(☎ 063-280-2225)

지역의 특수성,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

▣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으로 정책 효과성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

- 전북자치도의 특수성과 지역현안,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정책 추진
-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편의성 및 삶의 질 제고

시행 전	시행 후
▶ 법령*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설치·운영 * 정부조직법 제3조,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	▶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전북자치도에서 수행

조
문
명

▲ (제105조)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

32. 자치교육 실현 특례 (제112~115조)

전북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, 유초등특수교육과, 교육협력과(☎ 063-238-3343, 3306, 3262)

각급학교 운영 및 교육기반 구성에 관련된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고,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자율권이 추가되어 교육자치가 더욱 확대됩니다.

▣ 교육과정을 전북 교육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됨으로써, **학교운영의 자율권 확대**

- 자율학교 운영의 권한 확대로, 전북형 자율학교 모델 구축·운영
- 유·초·중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기반 구성을 위한 권한 도조례로 이양

시행 전	시행 후
▶ 자율학교 - 학기(심의 必), 수업일수(1/10 범위 내) 등 ▶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운영	▶ 자율학교 운영 확대 - 교직원 배치기준, 수업일수, 휴업일 등 ▶ 유아교육법의 일부 권한 도조례로 위임 - 설립기준, 학급편성, 학기, 방과후 교육과정 등 ▶ 초·중등교육법의 일부 권한 도조례로 위임 - 통합운영학교의 시설·설비, 교직원 배치 기준,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 설립·운영, 원격교육 운영 기준 등 ▶ 농촌유학 행·재정적 지원 확대 - 테마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차별화된 농촌유학 운영

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발전계획 】

- ▶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: **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**(‘24~)
- ▶ 전북미래학교 공모 선정에 따른 운영 지원 계획 (미래교육 실행 역량 강화)

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100개교	132개교	160개교	200개교

현황

- ▶ 자율학교 현황 : (‘24) 79교(신청27교, 직권지정 52교)
- ▶ 농촌유학 운영학교 : (‘23) 10개 사군, 18개교, 84명 → (‘24) 13개 사군, 31개교 137명
⇒ 지역별 특색이 있는 테마식 농촌 유학 운영 및 지원 확대

조
문
명

- ▲ (제112조)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
- ▲ (제113조)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

- ▲ (제114조) 초·중등교육에 관한 특례
- ▲ (제115조)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

33. 감사위원회 설치 (제117~124조)

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(☎ 063-280-2146)

공정하고 투명한 자치감사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됩니다.

▣ 「전북특별법」에 따라 자치감사를 수행하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설치

- 전북특별자치도 집행기관, 14개 시·군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·학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수행

시행 전	시행 후
▶ (명칭) 전라북도 감사관실 ▶ (내용)독임제 행정기관, 자체감사기구 - 전라북도 집행기관 및 소속기관, - 시·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	⇒ ▶ (명칭)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▶ (내용) 합의제 행정기관, 자치감사기구 - 전북특별자치도 집행기관 및 소속기관 - 시·군 지방자치단체 사무 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

조문명	▲ (제117조)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▲ (제118조) 감사위원장 ▲ (제119조)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▲ (제120조) 자치감사계획 등	▲ (제121조)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▲ (제122조) 징계·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▲ (제123조)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▲ (제124조) 정치운동의 금지
-----	---	--